

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-448호

수탁·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,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탁·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수탁·위탁거래의 공정화

제2조(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지원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수탁기업협의회 결성 및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
- 우수 수탁기업협의회 선정 및 홍보
- 수탁기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
-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 간담회 등 통한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 지원
-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에 대한 교육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고,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3조 <삭제>

제4조(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) ①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"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"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본사(또는 주된 사업장)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신청서(별도양식) 1부
- 최근 1년간 수탁기업 명단(별도양식) 1부

②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청을 받은 때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, 거래 수탁기업 면접조사(면접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) 및 현장 확인조사 등을 실시한 후 규칙 제5조의2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기업을 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대상으로 추천한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에 대해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) 중소벤처기업부장은 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관련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2년간(확인일이 속한 연도 및 다음 연도) 수탁·위탁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면제
2. 정책자금 지원 시 우대
3.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대
4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공기관에 물품·공사·용역을 납품하거나 인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점 부여
5. R&D 자금지원 시 우대
6.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시 우대

제6조(교육명령 운영절차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은 규칙 제7조에 의한 별점기준을 충족하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별점이 부과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하되, 제1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(이하 "교육명령 대상기업")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시간을 가산할 수 있다.

③ 교육명령 및 이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.

1. 중소벤처기업부장은 교육시간, 교육내용, 교육기관, 교육대상 인원 등 세부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교육명령통지서를 발송한다.
2. 교육명령 대상기업은 교육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4항제1호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.
3. 교육대상자는 교육명령 대상기업의 법 위반행위에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임·직원(관리자급 이상) 1인으로 한다.

④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.

1. 교육기관은 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2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또는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.
2. 교육기관은 교육장소 선정·강사섭외·교육자료 준비 등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3. 교육기관은 교육명령 대상기업에 대한 교육이 종료될 경우 당해기업에게 교육일자·교육시간·참석인원·교육내용 등 교육명령이행사실을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.
4. 교육기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교육명령 대상기업으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.
5.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및 교육비 청구계획 등을 산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6. 중소벤처기업부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예산(장소임차, 강사료 등)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교육명령의 연기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.

1. 교육명령 대상기업이 지정한 기간 이내에 교육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이행시기 등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.

2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명령 대상기업이 교육연기를 요청한 경우,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⑥ 교육기관은 교육명령 대상기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경우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⑦ 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하도급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에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교육명령 대상기업은 교육받은 일시 및 장소, 강사명, 교육내용, 교육참가자명 등 교육실시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교육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

제7조 ~ 제14조 <삭제>

제15조(사업이양 대상 업종 및 품목 지정) 법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 이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은 [별표 1]과 같다.

제4장 보칙

제16조(기타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또는 기타 세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 시행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7조(재검토 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8조(규제의 재검토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(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표준약정서) ①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표준약정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.</p> <p>②제1항의 표준약정서는 제조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적용하며 건설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, 용역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한다.</p> <p>③제조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맺은 위탁기업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의2에 의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다른 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그 약정 또는 계약의 내용이 제1항의 표준약정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규칙 제5조의2제4호에 의한 표준약정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.</p>	<p><삭 제></p>
<p>별지 제1호 서식</p>	<p><삭 제></p>